

##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일반창업분야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일반창업분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I

### 개요

#### □ 목적

- 녹색산업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성장 지원

#### □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3 참고)

#### □ 모집규모 : 총 110개사(명) 내외

모집 부문	운영 기관	지원 규모(예정)*
예비창업자 부문	마크앤컴퍼니	40명 내외
창업기업 부문	탭엔젤파트너스	30개사 내외
	엠와이소셜컴퍼니	30개사 내외
성장창업기업 부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개사 내외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집 부문에 동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탈락 조치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 경우 선정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탈락 조치

※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분야는 별도로 모집하지 않음

####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6.10.31.(약 7개월간)

## □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개인·법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예외: 최근 2년 이내('24.1.1.~현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폐업(해산, 청산, 탈퇴 포함)한 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없더라도 지원 불가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9.2.9.~'26.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9.2.9.~'26.2.9.)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5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 신청 자격 제한

- (세금·금융 등) 국세·지방세 체납자, 신용불량 거래처, 금융자산 압류 진행자 또는 지급보증보험 증권 발행 불가, 휴·폐업 중
- (법규위반·부정수급)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조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대상자, 관련 지침 상 참여제한 대상자
- (중복·기수혜) 과년도에 동일 모집 부문으로 지원받은 경우, 3년 내 기후부 운영 특정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3년 이내 동일과제로 유사 정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동시 신청) 과제별 차별성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과 동시에 신청이 불가하며,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탈락 조치  
※ (아래)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 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

★ 신청 자격 제한, 신청 유의사항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VII.유의사항 및 덧붙임 10을 반드시 참고 ★

## II

## 지원내용

### □ 창업 자금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 (성장창업기업)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 신제품 개발,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부 문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규모
예비창업자	국고보조금		70% 이하	60백만원 이내
	자기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물	30% 이상	
창업기업	국고보조금		70% 이하	80백만원 이내
	자기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금	10% 이상	
현 물	20% 이하			
성장창업 기업	국고보조금		70% 이하	230백만원 이내
	자기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금	10% 이상	
현 물	20% 이하			

- ※ 자기부담금(현물) : 지원과제 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대표자와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 참여인력의 인건비만 계상율에 따라 계상 가능
- ※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인건비 외로 계상 가능)으로 대체 가능(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물로 대체 불가)
- ※ 관세, 부가세 등은 사업비로 계상 불가

### □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컨설팅, 투자연계 등)
  - ※ 운영기관 개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내용은 덧붙임 14를 참고
- (성장창업기업)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컨설팅, 투자연계 등)

### Ⅲ

## 신청 및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26년 2월 19일(목) ~ 3월 3일(화) 18시 정각
  - ※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 시스템 특성상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른 후 서버에 파일 저장이 완료된 시점이 18:00:00을 초과할 경우 접수가 무효 처리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회원가입) 예비창업자** - 개인회원 가입, **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 - 기업회원 가입  
**(신청메뉴)** [환경산업지원2] - [에코스타트업] - [사업신청]
  - (유의사항1)** 창업기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메뉴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며, 신청 시 **선택한 운영기관을 추후에 변경할 수 없음** (운영기관 소개자료는 덧붙임 14 참고)
  - (유의사항2)**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가 직접 하여야 하며**(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예정자),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제/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공통필수서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
    - (사업자등록증) 기존발급본 인정
    -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되는 경우 인정, 단 유효기간내에 창업기업의 업력이 7년을 초과하면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
  - ※ **(유의사항)**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소요되는 준비기간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니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 필요  
(발급 지연 · 서류미비로 평가 제외의 귀책 사유는 신청인에 있으며, 발급기관·접수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국고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구분	제출서류	
예비 창업자	공통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신청자))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3) 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 ③-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신청자 본인의 인건비 증빙,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11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④-1.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서의 경우 열람용이 아닌 직인날인본을 제출 ④-2.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⑤ 덧붙임 8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⑥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⑦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⑧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선택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신청 시 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시스템 내 해당 항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창업 기업	공통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신청자) 및 사업책임자)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5) 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 ③-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11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④-1. 사업자등록증 ④-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④-3.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발급) ⑤ 덧붙임 8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1.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⑥-2.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발급) ※ 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제출
	선택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신청 시 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시스템 내 해당 항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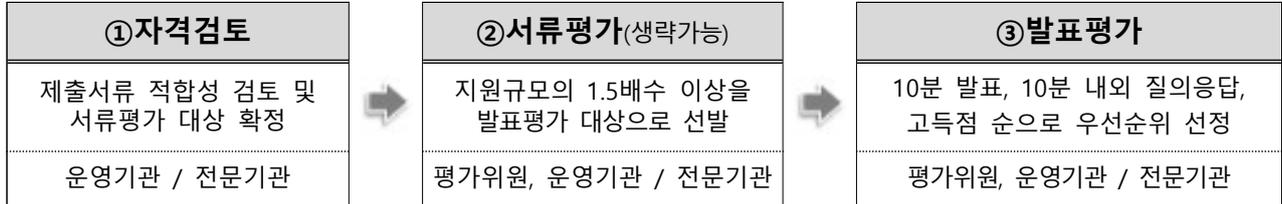
구분	제출서류	
성장 창업 기업	공통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신청자) 및 사업책임자)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6) 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 ③-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11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④-1. 사업자등록증 ④-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④-3.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발급) ⑤ 덧붙임 8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⑥-1. 주주명부 ⑥-2. 투자유치확인서(덧붙임 9 참조) ⑥-3. 투자계약서 * 투자유치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1.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⑥-2.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발급) ※ 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제출
	선택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신청 시 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시스템 내 해당 항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각 행정청의 소요에 따라서 창업기업확인서,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관련서류 발급에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에 따라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를 권장

## IV

## 평가

### □ 평가 절차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서류평가 이후, 발표평가 이전에 진행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신청규모·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서류평가 생략 가능

※ 서류평가 면제 대상

1. 최근 3년 이내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물산업혁신창업 대전에서 수상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우수로 평가 받은 자
3. 최근 3년 이내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로 평가 받은 자
4.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자

③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예비창업자는 본인,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발표평가 면제 대상

-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자

### □ 평가 기준

- 평가 및 가점 기준(덧붙임 12) 참조

### □ 최종 선정

-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지원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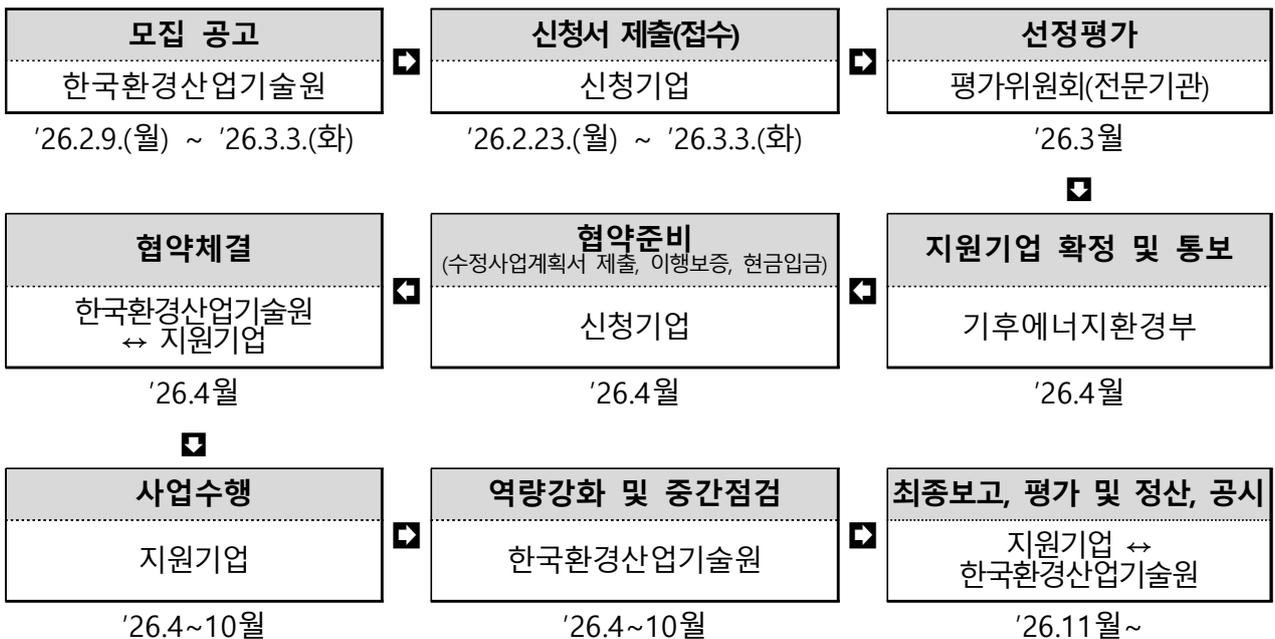
## 추진일정

###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성장창업기업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된 지원기업은 「보조금법」 및 관계규정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 선정된 지원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본인 명의로,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은 지원기업 명의로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맞춰 해당 계좌 사본과 잔액증명서(사업비 구성에 자기부담금 현금이 있는 경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비 전용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계좌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지원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하는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향후 회계정산 등을 통해 부적절한 집행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는 환수될 수 있다.  
※ 적정성 검토 기준 : 덧붙임 13, 16,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별도안내사항 등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완료한 후 관련 창업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중 전문기관과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와 사업비 정산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년간 성과보고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성과 검토 기준 : 본 공고문 덧붙임 15(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등

##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국고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자기부담금 현물로만 집행가능하고, 인건비 집행과 관련한 추후 문제 발생 시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반용역비는 총 사업비의 4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무형자산은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26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일반창업분야) 신청 시 과제별 차별성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탈락조치
- ※ (아래)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 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

## □ 평가, 선정, 협약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사업책임자 또는 예비창업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운영기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에 고지하고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기업)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중간·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국고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 「보조금법」 및 관계규정,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지원과제 선정 후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을 수령, 집행, 정산, 공시를 진행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보조금법」 및 관계규정,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부정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집행, 정산, 공시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기타사항

- 동 사업 관련 예산사정, 관련법 및 사업관리지침 개정 등에 따라 공고문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내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집행건 불인정에 대한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음
- 지원기업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관련서류 제출,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체결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의 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 업체와 분리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불인정될 수 있음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준비 필수
- 지원기업이 임직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 지원과제 사업비 교부는 협약기간내에 2회 이상 분할 교부할 수 있음

## □ 부문별 운영기관 및 전문기관 연락처

구 분	운영 기관			전문 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관명	전화	메일	전화	메일
예비창업	마크앤컴퍼니	02-587-6275	oi@markncompany.co.kr	032-540-2143	ecostartup1@keiti.re.kr
창업기업	탭엔젤파트너스	02-6241-6858	sano0572@tapaps.com	032-540-2144	ecostartup2@keiti.re.kr
	엠와이소셜컴퍼니	02-532-1237	ema.info.eco@gmail.com	032-540-2146	
성장창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32-540-2145	eco-startup@keiti.re.kr	032-540-2145	eco-startup@keiti.re.kr

- 덧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2.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예비창업자)  
 3.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예비창업자)  
 4.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5.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창업기업)  
 6.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성장창업기업)  
 7. 자기부담금 현물납부 확인서  
 8. 신청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9. 투자유치내역확인서  
 10. 신청 제외 대상  
 11. 사업비 구성 비율 예시  
 12. 평가 및 가점 기준  
 13. 지원 대상 참고 사항  
 14. 운영기관 소개자료  
 15. 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16. 비목별 정의 및 정산증빙서류. 끝.

- 환경창업 지원사업(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전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직급), 경력(기관명, 부서, 직위, 근무기간), 납세정보, 신용정보, 폐업 및 사업자보유현황, 수혜기업 타기관 지원이력
수집·이용 목적	환경창업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신청 및 지원, 사업 진도관리
보유·이용 기간	운영구(에코스퀘어 시스템 회원 탈퇴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환경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                       비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선택)	주소, 전화번호
수집·이용 목적	환경창업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신청 및 지원
보유·이용 기간	운영구(에코스퀘어 시스템 회원 탈퇴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시더라도 지원사업에 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동의                       비동의



환경창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신청서(예비창업자)

사업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과제명	과제분야(1차)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 등)	과제분야(2차)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 현황	휴대전화		이메일	
	거주지주소			
	실업예정일자			
창업계획 (예정사항)	주생산품·서비스			
	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입력)	세세분류항목명	
	과제수행예정지			
	총사업비 (신청금액)	국고보조금	원	%
	자기부담금	현금	원	%
		현물	원	%
		소계	원	%
		합계	원	100.00%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 시 체크 필수)	<input type="checkbox"/>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 사업자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로부터 3년) <input type="checkbox"/> 휴·폐업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제72조(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과년도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같은 모집분야로 지원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에 참여하는 자가 과년도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또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에 지원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조금법」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 2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p>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신청이 불가하거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p>			
	<p>첨부 1. 지원기업 사업계획서                  2.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 및 증빙서류(신청자 본인의 인건비 증빙,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인력에 한함)                  3.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4.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덧붙임8)                  6. (해당 시) 가점 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특허, 수상 등 실적 증빙서류</p>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p><b>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전문기관의 장) 귀하</b></p>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대표자		수혜기업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과제 유사성	
성명	생년월일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과제명/아이템	지원시작일	지원종료일	지원금액		
홍길동	yyymmdd		000-00-00000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yy-mm-dd	yy-mm-dd	50,00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기반지원자금						

- \* 용자·대출, 기술·신용 보증,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멘토링, 컨설팅, 공간·설비 제공 등), 1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유사과제, R&D과제,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구분	해당연도	대표자명	수혜기업명	지원과제명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에코톤) 수상자				
물산업혁신창업 대전 수상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로 평가 받은 자				
환경창업대전 수상자				

구분	해당연도	투자기관명	투자유치금액	투자유치 내역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과제분야>

1차 분야	2차 분야	주요 내용
청정대기	측정·감시	실시간 대기질 측정장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등
	산업 분야 배출 저감	대·중형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집진설비, 복합오염물질 처리용 촉매 필터, 비산배출 유해대기오염물질 회수·처리장치, 소규모 사업장 VOCs 회수·처리장치 등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오염물질 배출 후처리장치
	실내 공기정화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 공간 공기정화시스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실내오염물질 다중복합 흡착필터 등
	실외 공기정화	버스정류장, 터널 및 도심 밀집지역 공기정화시스템 등
자원순환 (탈 플라스틱 포함)	폐기물 저감	폐기물 선별, 소각, 감량화, 고품화, 압축, 용융 등
	유용자원 전환	폐기물 중 유용물질 회수, 재생 및 재활용, 원료화 등
	재활용	폐자원에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가치 창출
	탈 플라스틱	페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친환경 대체품 등
물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지능형 상·하수도 운영·관리, 정수장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 하·폐수 고도처리 등
	수질 관리	ICT기반 하천 오염 감시, 수질 예측, 녹조 제어 관리 등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스마트 워터 시티,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 IC 기반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
	토양·지하수	오염 토양 정화·복원, ICT 기반 지하수 오염분석 및 원인자별 정화, 지하수질 관리 등
탄소저감	탄소 포집, 저장, 이용(CCUS)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화학소재 및 연료 전환
	Non-CO2 온실가스 저감	Non-CO2 온실가스(N2O, CH4, F-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탄소흡수	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에너지 전환	다음의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품, 서비스 등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히트펌프, ESS 등 에너지 관리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저탄소 공정·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일반환경	생태계 복원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족목록에 포함된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위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예비창업자 부문)

※ 과제 개요서, 과제목표, 추진일정표,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https://ecosq.or.kr/>)에서 작성하여 제출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 과제 개요서는 최대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작성(파란색 글자 삭제후 작성)

과제명	
과제분야	<input type="checkbox"/> 청정대기 <input type="checkbox"/> 자원순환 <input type="checkbox"/> 물 <input type="checkbox"/> 탄소저감 <input type="checkbox"/> 일반환경
예비창업자명	생년월일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제품(서비스) 소개	※ 제품의 핵심기능, 타겟 소비자층, 사용처 등을 소개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
기술성	※ 현재 보유중인 역량, 창업팀 준비상태, 기술개발 전략, 경쟁사 차별화 전략 등 · · ·
시장성	※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안, 시장 차별화 전략 등 ※ 사업화 진행시, 적용받게 될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 및 조항 · · ·
기대효과	※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환경적, 사회적 효과 · · ·

□ 과제 목표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구분	매출(백만원)	신규고용(명)	투자유치(백만원)	특허출원(건)
협약 기간 목표				
Y+1년 목표				
Y+2년 목표				
Y+3년 목표				

- 정성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를 기재

-  
-

□ 추진일정표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협약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작성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단축 시 추후 일정 및 사업비 조정 필요)

추진계획 내용	일정
시제품 제작	2025-04-30~2025-07-19
시제품 성능 테스트(정확도 00% 이상)	2025-07-20~2025-08-20
홈페이지 구축	2025-07-20~2025-08-02

## □ 사업비

- ※ 지침 별표 2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 협약기간 내 지원과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 협약종료 이후 정산 시 소요되는 비용인 일반수용비(위탁회계정산비) 계상 필수  
(총사업비 0.5억 미만 641,818원, 0.5~1억 737,273원, 1~2억 880,909원, 2억이상 3억 미만 1,053,636원, 3억이상~5억 미만 1,280,000원)
- ※ 일반수용비 중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필수(추정가격 100만원 이내)
- ※ 컴퓨터, 범용 소프트웨어, 유형장치, 기계(완제품) 등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 사업비 구성 비율은 덧붙임 11 참고, 비목·세목별 정의, 한도 및 증빙서류 등 덧붙임 16을 참고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근거	총사업비(원)			구성비율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			00%
인건비	보수	대표자 인건비 1인*6개월*4,000,000원*참여율 30%			7,200,000	00%
인건비	일용임금	과제 참여 인력 5인*10,000원*5일	2,500,000			00%
운영비	일반수용비	시험분석비 1식*2,000,000원		2,000,000		
운영비	재료비	시금형 제작 8,000,000원*1식	8,000,000			00%
운영비	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 교육 및 장비 3,000,000원* 1식	3,000,000			00%
무형자산	무형자산	특허출원*2건*2,000,000원	4,000,000			00%
...	...	...	...	...	...	...
<b>합 계</b>			<b>21,100,000</b>	<b>2,000,000</b>	<b>7,200,000</b>	<b>100%</b>

###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 (인건비)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 대표자 또는 기고용된 인력에 한함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제출 증빙자료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원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 (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000,000원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	...	...		
...	...	...		
<b>합 계</b>				

○ 자기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예비창업자 중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자기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	...원	
<b>합 계</b>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	...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정산수수료 1식*737,273원	737,273원	총사업비 0.5~1억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5식*100,000원	500,000원	
<b>합 계</b>				

- ※ 여기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PDF로 인쇄하여 파일로 제출
- ※ 1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1. 사업 계획

##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 그림설명 2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3 >	< 그림설명 4 >

## 2. 기술성

### 2-1. 창업자의 보유역량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창업실패 경험 포함),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ex. 경험, 경력, 전공, 입상 실적, 교육 이수, 유사 업종 재직 경험, 의지 등)

- 
- 
- 

### 2-2. 기술의 차별성

※ 경쟁아이템 대비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재

기존아이템	창업아이템

- 
-

### 3. 시장성

####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 3-2. 시장 진입 가능성

○ 시장 진출 전략

※ 주 소비자 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유지)

-

#### 3-3.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해당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률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한 내용 기재(가능한 범명 및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

-

-

## 4. 창업 Essay

※ 창업 후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동기, 경험담, 준비내용 등을 자유롭게 작성(질문 당 10줄 내로 간단하게 작성)

### 4-1. 창업 동기

이전 직장생활, 창업 성공/실패 경험,  
사업아이템을 개발코자 하는 동기 등

### 4-2. 창업 아이템이 환경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기후부 소관 법령 및 정책에 따라 창업 아이템이 기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4-3. 지난 1년간 창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한 노력은?

창업 아이템의 기술개발, 시장성 등 사전 검토 내용,  
창업에 필요한 자금, 장소, 인력 등을 확보한 과정 및 내용 등

환경창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신청서(창업기업 등)

사업명	<input type="checkbox"/>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모집부문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 <input type="checkbox"/> 성장창업기업		
과제명	과제분야(1차)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 등)	과제분야(2차)	
	기업명		기업유형	<input type="checkbox"/> 법인사업자 /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신청기업 현황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대표)		종목(대표)	
	설립일자		주생산품 분야	
	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입력)	세세분류항목명	
	본사주소			
	과제수행(예정)지			
	대표자	성명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전화	
사업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책/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총사업비 (신청금액)	국고보조금		원	%
	자기부담금	현금	원	%
		현물	원	%
		소계	원	%
	합 계		원	100.00%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 시 체크 필수)	<input type="checkbox"/>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로부터 3년) <input type="checkbox"/> 휴·폐업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제72조(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과년도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같은 모집분야로 지원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에 참여하는 자가 과년도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또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에 지원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기업이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부과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조금법」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 2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p>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신청이 불가하거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환경창업 지원사업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과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p> <p>첨부 1. 지원사업계획서                  2.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 및 증빙서류(대표자 증빙, 협약일 이전에 기 고용된 인력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발급)                  4.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조회서(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발급),                  ※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미등록 시,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로 제출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덧붙임8)                  6. (성장창업기업의 경우) 주주명부, 투자유치확인서(덧붙임9 참조), 투자계약서                  7. (해당 시) 가점 증빙서류 및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 등 실적 증빙서류</p>				
(기업명)			년 월 일	(인)
대표자				
<p><b>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전문기관의 장) 귀하</b></p>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대표자		수혜기업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과제 유사성	
성명	생년월일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과제명/아이템	지원시작일	지원종료일	지원금액		
홍길동	yyymmdd		000-00-00000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yy-mm-dd	yy-mm-dd	50,00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기반지원자금						

- \* 용자·대출, 기술·신용 보증,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멘토링, 컨설팅, 공간·설비 제공 등), 1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유사과제, R&D과제,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구분	해당연도	대표자명	수혜기업명	지원과제명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 수상자				
물산업혁신창업대전 수상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우수 평가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 평가자				
환경창업대전 수상자				

구분	해당연도	투자기관명	투자유치금액	투자유치 내역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 투자유치 실적은 최근3년 이내 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부터 누적으로 작성요망 (구주거래는 포함하지 않음)

**<과제분야>**

1차 분야	2차 분야	주요 내용
청정대기	측정·감시	실시간 대기질 측정장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등
	산업 분야 배출 저감	대·중형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집진설비, 복합오염물질 처리용 촉매 필터, 비산배출 유해대기오염물질 회수·처리장치, 소규모 사업장 VOCs 회수·처리장치 등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오염물질 배출 후처리장치
	실내 공기정화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 공간 공기정화시스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실내오염물질 다중복합 흡착필터 등
	실외 공기정화	버스정류장, 터널 및 도심 밀집지역 공기정화시스템 등
자원순환 (탈 플라스틱 포함)	폐기물 저감	폐기물 선별, 소각, 감량화, 고품화, 압축, 용융 등
	유용자원 전환	폐기물 중 유용물질 회수, 재생 및 재활용, 원료화 등
	새활용	폐자원에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가치 창출
	탈 플라스틱	페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친환경 대체품 등
물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지능형 상·하수도 운영·관리, 정수장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 하·폐수 고도처리 등
	수질 관리	ICT기반 하천 오염 감시, 수질 예측, 녹조 제어 관리 등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스마트 워터 시티,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 IC 기반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
	토양·지하수	오염 토양 정화·복원, ICT 기반 지하수 오염분석 및 원인자별 정화, 지하수질 관리 등
탄소저감	탄소 포집, 저장, 이용(CCUS)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화학소재 및 연료 전환
	Non-CO2 온실가스 저감	Non-CO2 온실가스(N2O, CH4, F-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탄소흡수	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에너지 전환	다음의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품, 서비스 등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히트펌프, ESS 등 에너지 관리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저탄소 공정·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일반환경	생태계 복원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종목록에 포함된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위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창업기업 부문)

※ 과제 개요서, 과제목표, 추진일정표,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https://ecosq.or.kr/>)에서 작성하여 제출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 과제 개요서는 최대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작성(파란색 글자 삭제후 작성)

과제명			
과제분야	<input type="checkbox"/> 청정대기 <input type="checkbox"/> 자원순환 <input type="checkbox"/> 물 <input type="checkbox"/> 탄소저감 <input type="checkbox"/> 일반환경		
창업기업명		설립일자	
대표자명		사업책임자명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제품(서비스) 소개	※ 제품의 핵심기능, 타겟 소비자층, 사용처 등을 소개 . .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기술성	※ 현재 보유중인 역량, 창업팀 준비상태, 기술개발 전략, 경쟁사 차별화 전략 등 . .		
시장성	※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안, 시장 차별화 전략 등 ※ 사업화 진행시, 적용받게 될 「폐기물관리법 등」환경관련 법령 및 조항 . .		
기대효과	※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환경적, 사회적 효과 . .		

□ 과제 목표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구분	매출(백만원)	신규고용(명)	투자유치(백만원)	특허출원(건)
협약 기간 목표				
Y+1년 목표				
Y+2년 목표				
Y+3년 목표				

- 정성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를 기재

- 
- 

□ 추진일정표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협약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작성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단축 시 추후 일정 및 사업비 조정 필요)

추진계획 내용	일정
시제품 제작	2025-04-30~2025-07-19
시제품 성능 테스트(정확도 00% 이상)	2025-07-20~2025-08-20
홈페이지 구축	2025-07-20~2025-08-02

## □ 사업비

- ※ 지침 별표 2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 협약기간 내 지원과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 협약종료 이후 정산 시 소요되는 비용인 일반수용비(위탁회계정산비) 계상 필수  
(총사업비 0.5억 미만 641,818원, 0.5~1억 737,273원, 1~2억 880,909원, 2억이상 3억 미만 1,053,636원, 3억이상~5억 미만 1,280,000원)
- ※ 일반수용비 중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필수(추정가격 100만원 이내)
- ※ 컴퓨터, 범용 소프트웨어, 유형장치, 기계(완제품) 등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 사업비 구성 비율은 덧붙임 11 참고, 비목·세목별 정의, 한도 및 증빙서류 등 덧붙임 16을 참고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근거	총사업비(원)			구성비율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			00%
인건비	보수	대표자 인건비 1인*6개월*4,000,000원*참여율 30%			7,200,000	00%
인건비	일용임금	과제 참여 인력 5인*10,000원*5일	2,500,000			00%
운영비	일반수용비	시험분석비 1식*2,000,000원		2,000,000		
운영비	재료비	시금형 제작 8,000,000원*1식	8,000,000			00%
운영비	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 교육 및 장비 3,000,000원* 1식	3,000,000			00%
무형자산	무형자산	특허출원*2건*2,000,000원	4,000,000			00%
...	...	...	...	...	...	...
<b>합 계</b>			<b>21,100,000</b>	<b>2,000,000</b>	<b>7,200,000</b>	<b>100%</b>

###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 (인건비)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 대표자 또는 기고용된 인력에 한함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제출 증빙자료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원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 (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000,000원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	...	...		
...	...	...		
<b>합 계</b>				

○ 자기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예비창업자 중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자기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	...원	
<b>합 계</b>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	...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정산수수료 1식*737,273원	737,273원	총사업비 0.5~1억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5식*100,000원	500,000원	
<b>합 계</b>				

- ※ 여기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PDF로 인쇄하여 파일로 제출
- ※ 1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1. 사업 계획

##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 그림설명 2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3 >	< 그림설명 4 >

## 2. 기술성

### 2-1. 보유역량

####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창업실패 경험 포함),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ex. 경험, 경력, 전공, 입상 실적, 교육 이수, 유사 업종 재직 경험, 의지 등)

-  
-  
-  
-

#### ○ 인력 구성 및 역할

※ 참여 인력 구성 및 역할 기재

번호	직급	성명	전공	역할	주요경력
1	대표자	○○○			
2	개발이사	○○○			
...					
...					
...					
...					

-  
-  
-  
-

## 2-2. 기술의 차별성

※ 경쟁아이템 대비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재

기존아이템	창업아이템

- 
- 
- 

## 2-3. 기술보호

※ 개발(한)하는 사업아이템의 기술보호 및 비밀보호 계획 기술

- - 
  - 
  -
- - 
  - 
  -

### 3. 시장성

####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

#### 3-2. 시장 점유 가능성

※ 사업아이템의 시장 점유 확보 가능성 및 잠재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3-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유지)

○

-

-

-

### 3-4.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해당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률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한 내용 기재(가능한 법명 및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

-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성장창업기업 부문)

※ 과제 개요서, 과제목표, 추진일정표,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https://ecosq.or.kr/>)에서 작성하여 제출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 과제 개요서는 최대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작성(파란색 글자 삭제후 작성)

과제명	
과제분야	<input type="checkbox"/> 청정대기 <input type="checkbox"/> 자원순환 <input type="checkbox"/> 물 <input type="checkbox"/> 탄소저감 <input type="checkbox"/> 일반환경
창업기업명	설립일자
대표자명	사업책임자명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제품(서비스) 소개	※ 제품의 핵심기능, 타겟 소비자층, 사용처 등을 소개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기술성	※ 현재 보유중인 역량, 창업팀 준비상태, 기술개발 전략, 경쟁사 차별화 전략 등 .
시장성	※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안, 시장 차별화 전략 등 ※ 사업화 진행시, 적용받게 될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 및 조항 .
기대효과	※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환경적, 사회적 효과 .

□ 과제 목표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구분	매출(백만원)	신규고용(명)	투자유치(백만원)	특허출원(건)
협약 기간 목표				
Y+1년 목표				
Y+2년 목표				
Y+3년 목표				

- 정성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를 기재

- 
- 

□ 추진일정표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협약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작성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단축 시 추후 일정 및 사업비 조정 필요)

추진계획 내용	일정
시제품 제작	2025-04-30~2025-07-19
시제품 성능 테스트(정확도 00% 이상)	2025-07-20~2025-08-20
홈페이지 구축	2025-07-20~2025-08-02

## □ 사업비

- ※ 지침 별표 2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 협약기간 내 지원과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 협약종료 이후 정산 시 소요되는 비용인 일반수용비(위탁회계정산비) 계상 필수  
(총사업비 0.5억 미만 641,818원, 0.5~1억 737,273원, 1~2억 880,909원, 2억이상 3억 미만 1,053,636원, 3억이상~5억 미만 1,280,000원)
- ※ 일반수용비 중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필수(추정가격 100만원 이내)
- ※ 컴퓨터, 범용 소프트웨어, 유형장치, 기계(완제품) 등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 사업비 구성 비율은 덧붙임 11 참고, 비목·세목별 정의, 한도 및 증빙서류 등 덧붙임 16을 참고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근거	총사업비(원)			구성비율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			00%
인건비	보수	대표자 인건비 1인*6개월*4,000,000원*참여율 30%			7,200,000	00%
인건비	일용임금	과제 참여 인력 5인*10,000원*5일	2,500,000			00%
운영비	일반수용비	시험분석비 1식*2,000,000원		2,000,000		
운영비	재료비	시금형 제작 8,000,000원*1식	8,000,000			00%
운영비	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 교육 및 장비 3,000,000원* 1식	3,000,000			00%
무형자산	무형자산	특허출원*2건*2,000,000원	4,000,000			00%
...	...	...	...	...	...	...
<b>합 계</b>			<b>21,100,000</b>	<b>2,000,000</b>	<b>7,200,000</b>	<b>100%</b>

###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 (인건비)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 대표자 또는 기고용된 인력에 한함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제출 증빙자료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원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 (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000,000원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	...	...		
...	...	...		
<b>합 계</b>				

○ 자기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예비창업자 중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자기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	...원	
<b>합 계</b>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	...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정산수수료 1식*737,273원	737,273원	총사업비 0.5~1억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5식*100,000원	500,000원	
<b>합 계</b>				

- ※ 여기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PDF로 인쇄하여 파일로 제출
- ※ 1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1. 사업 계획

##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 그림설명 2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3 >	< 그림설명 4 >

## 2. 기술성

### 2-1. 보유역량

####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창업실패 경험 포함),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ex. 경험, 경력, 전공, 입상 실적, 교육 이수, 유사 업종 재직 경험, 의지 등)

-  
-  
-  
-

#### ○ 인력 구성 및 역할

※ 참여 인력 구성 및 역할 기재

번호	직급	성명	전공	역할	주요경력
1	대표자	○○○			
2	개발이사	○○○			
...					
...					
...					
...					

-  
-  
-  
-

## 2-2. 기술의 차별성

※ 경쟁아이템 대비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재

기존아이템	창업아이템

- 
- 
- 

## 2-3. 기술보호

※ 개발(한)하는 사업아이템의 기술보호 및 비밀보호 계획 기술

- - 
  - 
  -
  
- - 
  - 
  -

### 3. 시장성

####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

#### 3-2. 시장 점유 가능성

※ 사업아이템의 시장 점유 확보 가능성 및 잠재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3-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유지)

○

-

-

-

### 3-4.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해당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률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한 내용 기재(가능한 법명 및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

-

-

환경창업 지원사업 자기부담금 현물납부 확인서

지원연도	2026 년
부 문 명	
과 제 명	
기 업 명 (사업책임자명)	

현물납부 내역 (단위: 원)

구분	품명/건물명	현물환산액	산출내역	비고
인건비	대표자인건비	000원	00개월×참여율×월급여	홍길동
	직원인건비	000원	00개월×참여율×월급여	홍길동

[첨부] 인건비 집행인력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신분확인서(재직, 재·휴학, 졸업, 퇴직증명서 등)

위와 같이 「2026년도 ○○○○○○ 지원사업」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현물 납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예비창업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인 (예비창업자 이름 기재)는 붙임의 서류를 제출함을 확인하며, 관리지침 제23조, 제28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번호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2	지원사업 계획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1	자기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2	자기부담금(현물) 현물납부 증빙서류 (신청자 본인 /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 인건비 증빙)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1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의 경우 열람용이 아닌 직인날인본으로 제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2	(해당시)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⑤	덧붙임 8에 따른 자가진단리스트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	(해당시)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1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2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⑧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서 택 서 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이 안될 수 있음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또한 향후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확인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 등 전체)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5조(협약의 해약), 제72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00.00

(예비창업자 이름 기재) (인)

#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창업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인 (**창업기업 회사명 기재**)는 붙임의 서류를 제출함을 확인하며, 관리지침 제23조, 제28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번호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2	지원사업 계획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1	자기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2	자기부담금(현물) 현물납부 증빙서류 (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1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3	창업기업확인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⑤	덧붙임 8에 따른 자가진단리스트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1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2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i>차세대 기업신용정보 조회</i> )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제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서 택 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이 안될 수 있음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또한 향후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확인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 등 전체)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5조(협약의 해약), 제72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00.00

(창업기업 회사명 기재) (인)

#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성장창업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인 (성장창업기업 회사명 기재)는 붙임의 서류를 제출함을 확인하며, 관리지침 제23조, 제28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번호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2	지원사업 계획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1	자기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2	자기부담금(현물) 현물납부 증빙서류 (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1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3	창업기업확인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⑤	덧붙임 8에 따른 자가진단리스트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1	주주명부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2	투자유치확인서(덧붙임 9 참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3	투자계약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1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2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⑧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차세대 기업신용정보 조회)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제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서류 사항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이 안될 수 있음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또한 향후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확인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 등 전체)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5조(협약의 해약), 제72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00.00

(성장창업기업 회사명 기재) (인)

번호	투자 유치 일자	투자 기관명 (펀드 운용사)	펀드 명칭	소재 국가	이해 관계인	투자 기관 유형	투자금 입금 일자	투자금 입금액 (원)	신주/ 구주 여부	투자 유형

※ (투자유치일자) 투자계약서 상 일자  
 (이해관계인) 투자계약서 상 명시된 이해관계인 전원을 기입  
 (투자기관유형) 창투자, 신기사,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창업기획자 등  
 (투자금 입금일자) 법인계좌에 투자금이 실제 입금된 날짜  
 (투자금 입금액) 법인계좌에 투자금이 실제 입금된 금액  
 (신주/구주여부) 신주/구주 여부  
 \* 현물투자와 구주투자는 실적에서 제외 예정  
 (투자유형) 신주투자 중 보통주, 우선주, CB, BW 등 구분

동사는 2026년 0 월 0 일자 에코스타트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유치 받았음을 확인하며, 만약 제출한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제재조치, 환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신청인 기업체명 : 00주식회사

대표자 : 홍길동

(인)

(파란색은 작성 후 삭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중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또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의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당해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 2020~2021년에 초기창업기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 ※ 2025년에 창업기업(기후테크 IP 분야)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참여 불가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정부지원이력 조회)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후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6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일반창업분야) 신청 시 과제별 차별성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
  - ※ (아래)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 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부과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지원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2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덧붙임 11 사업비 구성 비율 예시

지원구분	지원 세부 사항																														
예비창업자 창업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창업 자금 최대 60백만원</li> <li>▶ 총 사업비(100%)의 구성 : 국고보조금 70% 이하 + 자기부담금 30% 이상(현물 30% 이상)</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총 사업비 구성&gt;</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국고보조금</th> <th colspan="2">자기부담금</th> </tr> <tr> <th>현금</th> <th>현물</th> </tr> </thead> <tbody> <tr> <td>총 사업비의 70% 이하</td> <td>-</td> <td>총 사업비의 30% 이상</td> </tr> </tbody> </table> <p>※ 단, 현물 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b>&lt;사업비 구성 예시 &gt;</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총사업비</th> <th rowspan="2">국고보조금</th> <th colspan="2">자기부담금</th> </tr> <tr> <th>현금</th> <th>현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약 8,500만원</td> <td rowspan="4">6,000만원</td> <td>0원(0%)</td> <td>2,572만원(30%)</td> </tr> <tr> <td>857만원(10%)</td> <td>1,715만원(20%)</td> </tr> <tr> <td>1,715만원(20%)</td> <td>857만원(10%)</td> </tr> <tr> <td>2,572만원(30%)</td> <td>0원(0%)</td> </tr> <tr> <td><b>100%</b></td> <td><b>70% 이하</b></td> <td colspan="2"><b>30% 이상</b></td> </tr> </tbody> </table>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30% 이상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약 8,500만원	6,000만원	0원(0%)	2,572만원(30%)	857만원(10%)	1,715만원(20%)	1,715만원(20%)	857만원(10%)	2,572만원(30%)	0원(0%)	<b>100%</b>	<b>70% 이하</b>	<b>30% 이상</b>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30% 이상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약 8,500만원	6,000만원	0원(0%)	2,572만원(30%)																												
		857만원(10%)	1,715만원(20%)																												
		1,715만원(20%)	857만원(10%)																												
		2,572만원(30%)	0원(0%)																												
<b>100%</b>	<b>70% 이하</b>	<b>30% 이상</b>																													
창업기업 창업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창업 자금 최대 80백만원</li> <li>▶ 총 사업비(100%)의 구성 : 국고보조금 70% 이하 + 자기부담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총 사업비 구성&gt;</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국고보조금</th> <th colspan="2">자기부담금</th> </tr> <tr> <th>현금</th> <th>현물</th> </tr> </thead> <tbody> <tr> <td>총 사업비의 70% 이하</td> <td>총 사업비의 10% 이상</td> <td>총 사업비의 20% 이하</td> </tr> </tbody> </table> <p>※ 단, 현물 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b>&lt;사업비 구성 예시 &gt;</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총사업비</th> <th rowspan="2">정부지원금</th> <th colspan="2">창업기업 대응자금</th> </tr> <tr> <th>현금</th> <th>현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약 11,429 만원</td> <td rowspan="3">8,000만원</td> <td>1,143만원(10%)</td> <td>2,286만원(20%)</td> </tr> <tr> <td>2,286만원(20%)</td> <td>1,143만원(10%)</td> </tr> <tr> <td>3,429만원(30%)</td> <td>0원(0%)</td> </tr> <tr> <td><b>100%</b></td> <td><b>70% 이하</b></td> <td><b>10%~30%</b></td> <td><b>0~20%</b></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30% 이상</b></td> </tr> </tbody> </table>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약 11,429 만원	8,000만원	1,143만원(10%)	2,286만원(20%)	2,286만원(20%)	1,143만원(10%)	3,429만원(30%)	0원(0%)	<b>100%</b>	<b>70% 이하</b>	<b>10%~30%</b>	<b>0~20%</b>	<b>30% 이상</b>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약 11,429 만원	8,000만원	1,143만원(10%)	2,286만원(20%)																												
		2,286만원(20%)	1,143만원(10%)																												
		3,429만원(30%)	0원(0%)																												
<b>100%</b>	<b>70% 이하</b>	<b>10%~30%</b>	<b>0~20%</b>																												
<b>30% 이상</b>																															
성장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BM모델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창업 자금</li> </ul>																														

지원구분	지원 세부 사항			
<b>창업 자금 지원</b>	<b>최대 230백만원</b>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민간부담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b>&lt;총 사업비 구성&gt;</b>			
	<b>정부지원금</b>	<b>창업기업 대응자금</b>		
		<b>현금</b>	<b>현물</b>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단, 현물 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b>&lt;사업비 구성 예시&gt;</b>			
	<b>총사업비</b>	<b>정부지원금</b>	<b>창업기업 대응자금</b>	
			<b>현금</b>	<b>현물</b>
약 32,857만원	23,000만원	3,286만원(10%)	6,571만원(20%)	
		6,571만원(20%)	3,286만원(10%)	
		9,857만원(30%)	0원(0%)	
<b>100%</b>	<b>70% 이하</b>	<b>10%~30%</b>	<b>0~20%</b>	
		<b>30% 이상</b>		

1. 서류평가

① 예비창업자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15점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15점
	1-3. 과제 목표 및 전략	15점
	1-4. 추진일정의 적절성	15점
<b>소 계</b>		<b>60점</b>
2. 기술성	2-1. 보유역량	15점
	2-2. 기술의 차별성	10점
<b>소 계</b>		<b>25점</b>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5점
	3-2. 시장 진입 가능성	10점
<b>소 계</b>		<b>15점</b>
<b>총 계</b>		<b>100점</b>

② 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15점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15점
	1-3. 과제 목표 및 전략	10점
	1-4. 추진일정의 적절성	10점
<b>소 계</b>		<b>50점</b>
2. 기술성	2-1. 보유역량	15점
	2-2. 기술의 차별성	10점
	2-3. 기술보호	5점
<b>소 계</b>		<b>30점</b>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10점
	3-2. 시장 점유 가능성	10점
<b>소 계</b>		<b>20점</b>
<b>총 계</b>		<b>100점</b>

### ③ 성장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10점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5점
	1-3. 과제 목표 및 전략	10점
	1-4. 추진일정의 적절성	5점
<b>소 계</b>		<b>30점</b>
2. 기술성	2-1. 보유역량	15점
	2-2. 기술의 차별성	10점
	2-3. 기술보호	5점
<b>소 계</b>		<b>30점</b>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20점
	3-2. 시장 점유 가능성	20점
<b>소 계</b>		<b>40점</b>
<b>총 계</b>		<b>100점</b>

## 2. 발표평가

### ① 예비창업자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1-1.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15점
	1-2.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15점
<b>소 계</b>		<b>30점</b>
2. 창업역량 및 기술성	2-1. 창업의지 및 실현 가능성	20점
	2-2. 아이템의 차별성	10점
<b>소 계</b>		<b>30점</b>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3-1. 시장 진입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20점
	3-2.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20점
<b>소 계</b>		<b>40점</b>
<b>총 계</b>		<b>100점</b>

### ② 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1-1.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15점
	1-2.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15점
<b>소 계</b>		<b>30점</b>
2. 사업역량 및 기술성	2-1.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15점
	2-2. 아이템의 기술성	15점
<b>소 계</b>		<b>30점</b>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3-1. 시장 확대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20점
	3-2.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20점
<b>소 계</b>		<b>40점</b>
<b>총 계</b>		<b>100점</b>

### ③ 성장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1-1.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10점
	1-2.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10점
<b>소 계</b>		<b>20점</b>
2. 사업역량 및 기술성	2-1.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15점
	2-2. 아이템의 기술성	15점
<b>소 계</b>		<b>30점</b>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3-1. 시장 확대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25점
	3-2.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25점
<b>소 계</b>		<b>50점</b>
<b>총 계</b>		<b>100점</b>

< 지원과제 가점 기준 >

구분	가 점 내 용	점수	증빙서류
1	친환경인증 보유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內)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해당 인증서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內)		
	환경산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증		
	환경 신기술 검증 또는 인증 기업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있는 신청기업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해당 증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수성과 20선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있는 신청기업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3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4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 중인 기업에 한함	1점	입주계약서

※ 가점은 최대 2점까지만 부여하며, 발표평가 결과에 반영

※ 증빙자료를 정해진 방법대로 제출하지 않을 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라.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사목의 바이오에너지·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공급·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운반·공급·이용을 위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운반·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이용을 위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 덧붙임 14.1 예비창업자 운영기관 소개자료 (마크앤컴퍼니)

## □ 운영기관 개요

### ○ (기업명) 마크앤컴퍼니 (대표자: 홍경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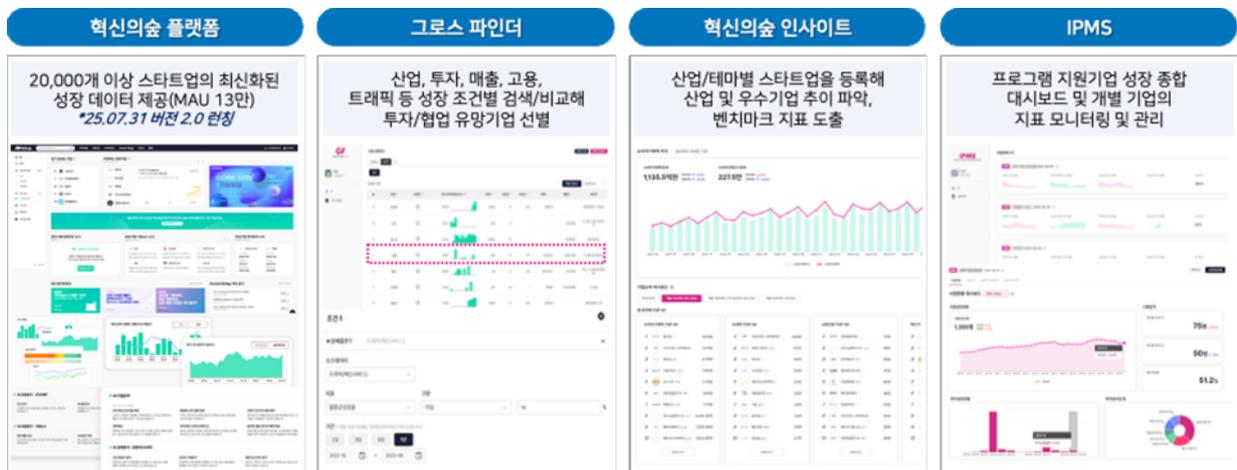
—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No.1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셀러레이터



[마크앤컴퍼니 사업 영역]

### ○ (운영사가 보유한 강점)

— ‘혁신의숲’ 운영: 2만 여 스타트업(법인)의 최신화된 매출, 고용현황, 거래액, 투자 이력, 보도자료, R&D 이력, 특허 등 110여 가지 성장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간 활성 방문자 수 13만 명의 생태계 핵심 플랫폼을 운영



[스타트업, 투자사 데이터베이스 ‘혁신의숲’]

- **사내벤처 선발, 육성 및 투자:** 현대자동차그룹, 농협,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128개의 사내벤처 팀 선발, 71개 팀을 전담 육성해오면서 예비창업자에 최적화된 육성 노하우를 보유
  - ※ 당사의 육성 과정을 거친 71개 사내벤처 팀 중 40개 팀은 모기업(본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분사 창업 및 평균 2억원 이상의 시드투자 유치 또는 사내 사업화에 성공함으로써, 총 56.3%의 사업화율이라는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음
-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 8개 투자 조합, AUM 270억 원의 시드 ~ pre-A 단계, 창업 3년 미만(선호)의 기술, 뷰티 및 라이프스타일 스타트업 중심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이자 TIPS, LIPS 등 R&D 및 사업화 추천과 글로벌 진출 지원

## □ 프로그램 소개

### ○ 사전설명회: 잠재 지원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문의 사항에 적극 대응

-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잠재 지원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와 목적, 지원 혜택을 설명하여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까지 연결
- 전화 및 이메일의 문의 창구를 운영하여, 지원 과정에서의 궁금증에 대한 대응

### ○ 360도 사전 진단, 담임 멘토, 사업화 전략 컨설팅

- 팀 자가 진단 + AI 심사역 진단 + 사내벤처 멘토 출신의 사내 인력이 360도로 진단하여 팀의 강점과 개선점 및 집중 육성 방향에 대한 설계
- 사내벤처 멘토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가 각 팀을 전담하여 6개월간 육성 지원함
- 법률, 회계, IP, 유통, 마케팅, 제조 등 15개 분야 150여명의 전문가 그룹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팀의 수요에 기반한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팀당 최대 3회)

### ○ 녹색창업교육

- 기업가 정신 고취, 경영 및 사업 역량 증대, AI 실무 교육, 데이터 기반의 벤치마킹 전략 수립 등 사내벤처 육성 노하우를 반영한 3단계 교육 및 녹색 산업 특화 교육을 통해 법인 창업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증대

### ○ 고객 반응 조사 기반의 고도화 지원

- 실제같은 환경에서의 사용자 리서치를 통해 제품, 서비스, 솔루션의 시장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고도화하는 온라인 분석 서비스 제공
- 분석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각 팀의 가설 검증 및 시제품 고도화 방향 수립

### ○ 투자 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 지원

- 투자 심사역의 1:1 미팅을 기반으로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팀에게 IR 스토리텔링 멘토링 및 피칭덱 디자인 지원 등 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 ‘혁신의숲’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는 환경 및 녹색 에너지 분야 Seed 투자 이력이 있는 70여 투자사를 대상으로 Private 모의 IR 및 데모테이에 홍보, 초청

□ 기투자이력 및 성과

- (투자자산) 본계정 10억원, 운용펀드 268억원
- (기투자기업) 총 50개사, 누적 137억원 투자
- (기투자기업 사례) 3개사

브이유에스



■ 기업내용

- (사업모델) AI,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의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솔루션 '망고(MANGO)' 운영
  - 탄소배출 절감과 교통 효율성 증대를 위한 AI 기반 경로 및 배차 최적화 시스템 개발
  - 폐기물 물류 운송을 위한 경로 배차 최적화 플랫폼 'MANGO' 개발 및 운영
  - BGF 에코사이클,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갈다(빠기), 에코비트 등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경로 최적화 및 배차 기술 고도화 업무협약 및 협업 진행
- (투자일자) 2022.03.11

타운즈



■ 기업내용

- (사업모델) 이웃간 카셰어링 서비스 '타운카' 운영
  - 국내 유일 P2P 차량공유 서비스
  - 국토교통부 규제 샌드박스 사업승인 및 경기도 전역 사업 운영
  - 누적회원 약 15만명, MAU 12만명으로 빠르게 성장 중
  - 한국타이어, 기아자동차, GS리테일 등 대기업과 협업 프로젝트 진행
- (투자일자) 2022.01.28, 2021.11.01



■ 기업내용

- (사업모델) 실시간 전수검사가 가능한 산업용 비파괴 성분분석기 및 솔루션 제공
  - 중성자 방사화 기술 및 AI를 활용한 비파괴 성분분석 기술 국산화 성공
  - 철광석, 철강 스크랩,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등 산업 폐기물의 정밀 분석을 통해 폐기물 리사이클링, 소재 사용 절감, 탄소 중립에 기여
  - 현대제철 등 철강산업 및 이차전지, 시멘트 산업 대상 중성자 성분 분석기 도입 논의 중
- (투자일자) 2024.02.19.

□ 마크앤컴퍼니 사무국

- (전화번호) 02-587-6275
- (이 메 일) oi@markncompany.co.kr

□ 운영기관 개요

- (기업명) (주)탭엔젤파트너스 (대표자 : 박재현)
- (운영사가 보유한 강점)
  - 모태펀드 운영사로서 보육과 투자 전문성을 인정받은 딥테크 투자 전문 액셀러레이터
    - ① 환경 등 딥테크 분야 산업 및 기업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 내재화
    - ② 즉시 투자가능한 220억원 규모 재원 보유, 4억원 이상 직접투자 예정
    - ③ 후속투자 전 과정 지원을 통한 단기간 내 밸류업 사례 보유
  - 다년간 환경분야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노하우를 쌓은 환경특화 액셀러레이터
    - ① 환경기업이 정책, 규제, 인증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 보유
    - ② PoC 및 기술실증을 위한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연결
    - ③ 국내 유일 환경특화 IR 지속 운영을 통한 폭넓은 환경 VC 네트워크

□ 프로그램 소개

- (녹색창업교육) 환경 산업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
  - 환경기업의 AI 전환 및 탄소배출권 등 최신 트렌드를 포함하여, 에코스타트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성장을 경험한 환경창업 선배기업 특강 제공
- (맞춤형 멘토링) 전담 멘토제를 통한 기업별 밀착 관리
  - 검증된 멘토링 시스템과 더불어 운영사 인력과 공간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컴퍼니빌딩형 육성 시스템 제공
- (투자유치 설명회) 환경특화 IR “Green IR DAY”
  - 국내 환경·에너지 펀드 운용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자 밋업 행사

- (네트워킹) Green Bridge 네트워킹 행사
  - 업계 최초로 환경펀드 운용사가 직접 투자 전략을 발표하는 리버스 피칭 세션과 함께 운영되는 투자지원형 네트워킹 행사
- (ESG 컨설팅) 글로벌 규제 사전대응 지원
  - 전문적인 ESG 진단 리포트와 단계별 로드맵을 통해 자생적 ESG 경영 체계를 마련 지원
- (전문상담반) 경영일반 및 사업화 전반 정기 상담채널 제공
  - 세무·법무·노무 등 초기 기업이 당면하는 필수 경영 분야와 신용보증기금, 서울경제진흥원 등 자금조달·정책인프라 활용지원
- (Momentum DAY) 투자자 1:1 밋업
  - IR Deck 구성 지원 및 투자자와의 1:1 심층 밋업을 통해 투자 가능성 검증 기회 지원
- (팸투어) 제조·장치 산업 특화 현장 방문형 IR 운영
  - 기술력과 설비 가동 현황을 투자자가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현장실사 동반형 IR 기회 제공

□ 기투자이력 및 성과

- (투자자산) 본계정 10억원, 운용펀드 550억원
- (기투자기업) 총 63개사
- (기투자 환경기업 우수사례) 총 4개사

에이에스이티	나인와트
	
<p>□ 기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모델) 차세대 이차전지 부품 개발 및 제조</li> <li>○ (투자일자) '24.08 / '24.09 / '25.09</li> </ul>	<p>□ 기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모델) 도시/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연계 및 관리 솔루션</li> <li>○ (투자일자) '24.04.02</li> </ul>
뉴로팩	퀀텀캣
	
<p>□ 기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모델) 천연원료를 활용한 생분해성 멀칭필름 개발</li> <li>○ (투자일자) '22.11.02.</li> </ul>	<p>□ 기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모델) 에너지·공기정화 분야의 금 나노촉매 솔루션</li> <li>○ (투자일자) '22.02.14</li> </ul>

□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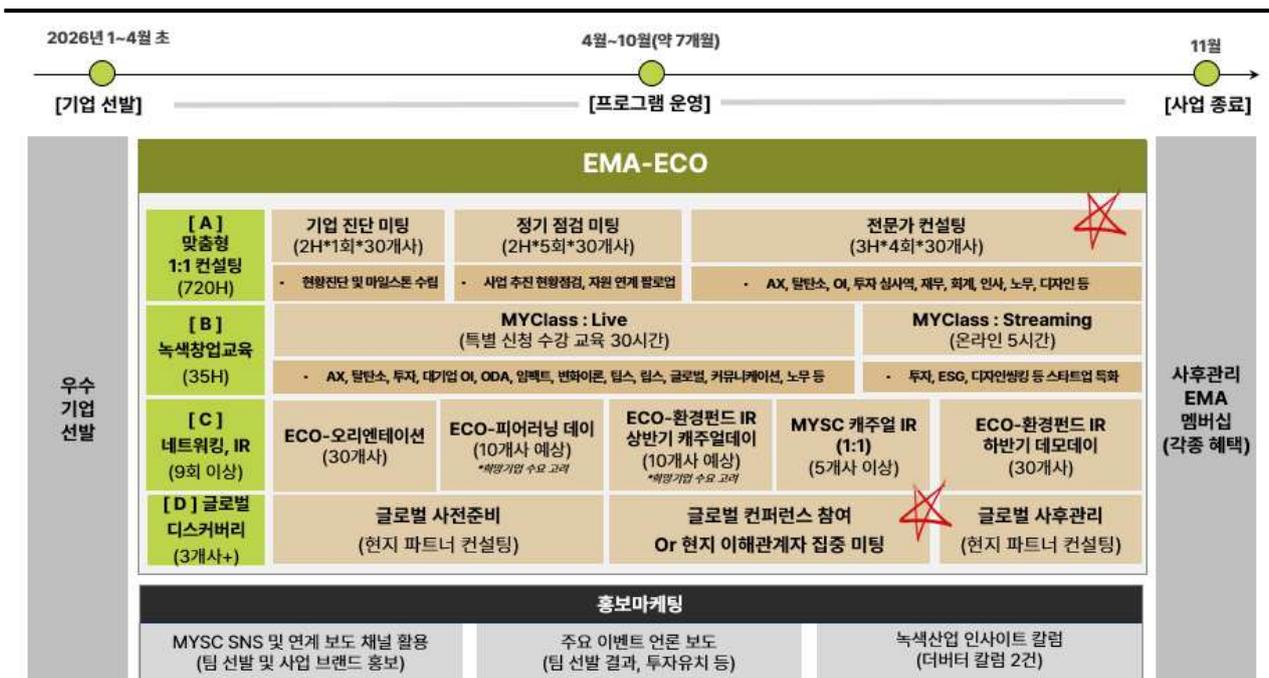
- (전화번호) 02-6241-6858
- (이 메 일) sano0572@tapaps.com

## 덧붙임 14.3 창업기업 운영기관 소개자료 (엠와이소셜컴퍼니)

### □ 운영기관 개요

- (기업명) (주)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자 : 김정태)
- (운영사가 보유한 강점)
  - (육성경험) 안정적인 인력구조를 기반으로 2024-2025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포함 다양한 분야의 액셀러레이팅을 다년간 진행하며, 스타트업 육성 전문성을 보유함
  - (직접투자) AUM 1,083억 원을 기반으로 누적 투자 286건, 2025년 한 해 63건의 투자를 집행하였으며, Seed부터 시리즈 B 이상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
  - (혼합금융) TIPS, LIP 운용 및 국제개발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운영으로 기업 단계에 따라 직접 투자와 연계하여 다양한 혼합금융 방식의 기업 현금흐름 지원이 가능함
  - (해외진출) 로컬 및 글로벌 지사와 함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고 있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함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프랑스 등)
  - (공간운영) 서울 성수동에 공유 오피스 ‘메리히어’ 를 자체 운영하며 스타트업 시장 검증은 돕고 있으며, 프로그램 선발 시 멤버십 할인 혜택을 제공함

### □ 프로그램 소개



2026 에코스타트업 : EMA - ECO 프로그램 요약 이미지

- (사전설명회) 2026년 에코스타트업 신청 및 문의 창구
  -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안내함으로써 구체적인 지원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함
  - 2025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참여기업의 ‘MYSC 사용방법’, 2025년 에코스타트업 참여기업 겸 MYSC 포트폴리오사의 ‘에코스타트업 실전 노하우’ 등 MYSC와 에코스타트업을 경험한 선배기업의 실제 후기를 공유함
- (전담멘토 멘토링) 실효성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참여기업별 전담 멘토 배정 후, 기업 현황 진단 및 KPI 수립을 지원하고 매월 1:1 정기 미팅을 통해 과제 성과관리 및 기업 성장단계를 확인함
  - 기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규모 행사보다 기업별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적합한 투자사, 파트너, 전문가 등을 연결하고 실제 성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녹색창업교육) 녹색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MYSCClass’
  - MYSCClass : Streaming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 전반의 실무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무료 쿠폰을 제공함 (약 30만 원 상당)
  - MYSCClass : Live를 통해 AX, 탈탄소, 환경인증, 마케팅, 재무회계, 인사관리, 투자유치 등 환경 및 창업과 관련된 전문가의 강의를 제공하며, 기업의 니즈에 따라 필요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네트워킹) 투자사부터 선배기업까지 다양한 ‘네트워크’
  - 투자 유치 희망 기업을 위해 환경펀드 보유 투자사 또는 심사역을 매칭하고,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멘토링 연결부터 투자심사 IR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함
  - MYSC 주요 포트폴리오사 대표자와의 만남으로 유의미한 창업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대표자 간의 인사이트-네트워크-관계자본 형성을 지원함

## □ 기투자이력 및 성과

- (투자자산) 본계정 19.1억원, 운용펀드 1,064.4억원
- (기투자기업) 총 286개사 (2025년 63개사 투자)
- (기투자기업 사례) 총 4개사  
(\*2025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참여기업 15개사 중 직접투자 4개사)

## 플럭스

### FLUX

- (사업모델) 차세대 배터리 및 에너지 소재 기술을 개발해 고성능·고효율·저탄소 배터리 솔루션과 관련 핵심 공정 기술을 제공
- (투자일자) 2025. 05

## 신선고

### 신선GO

- (사업모델) 콜드체인(저온 유통) 물류 솔루션을 위한 정온 배송 기술과 IoT 기반 운송 장치를 개발해 신선·냉장 상품의 품질 유지와 탄소 배출 저감을 지원
- (투자일자) 2025.07

## 해바캬

### HAVACAM

- (사업모델) AI·IoT 기반 친환경 스마트 방역 및 해충 유인·포충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을 개발, 데이터 기반 운영 시스템으로 실내·업소용 방역 효율 증대
- (투자일자) 2025.12

## 뉴톤

### NEWTONNE

- (사업모델)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탄소 관리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탄소 감축 데이터를 통합 수집·검증하고 국제 표준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기후테크 솔루션
- (투자일자) 2025.12

## □ 문의처

- (전화번호) 02-532-1237
- (이 메 일) ema.info.eco@gmail.com

- 정량적 목표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온라인 시스템에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 사업계획서와 온라인 시스템에 작성된 목표가 다를 경우, 선정평가,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에서는 시스템에 작성된 목표로 검토 및 반영
- 모든 성과는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만 인정
- 신청 시 제출된 정량적 목표는 최종평가 시에 반영
- 성과로 인정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비 정산에 불인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구분	증빙방법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공급가액 합계 - 기간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통계 또는 합계표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공급가액 합계(국세청홈택스 발급, PDF 출력본)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공급가액 합계(국세청홈택스 발급, PDF 출력본) -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되지 않은 수출내역에 대해서는 수출신고필증(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등 발급),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 기타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 ※ 기업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매출장 등)는 인정되지 않음																				
신규고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발급일시가 협약종료일 이후여야 함																				
투자유치	- 투자계약서 신주 납입 총액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행주식 - 기타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 ※ 기술 및 현물 출자, 정부지원사업, 민간기업 업무협약 및 지원프로그램,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융자 등은 불인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투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div>																				
특허출원	- 출원번호통지서 및 서지사항 ※ 특허출원 시 명세서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특허에 한하여 인정 ※ 특허결정서, 발명자가 수혜기업이 아닌 단순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이전은 불인정 ※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66조(성과물의 귀속)에 따른 출원인 인정 범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지원분야</th> <th rowspan="2">사업자등록 형태</th> <th colspan="2">성과 인정 여부</th> </tr> <tr> <th>출원인이 지원기업</th> <th>출원인이 대표자 개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예비창업자</td> <td>개인사업자</td> <td>○</td> <td>○</td> </tr> <tr> <td>법인사업자</td> <td>○</td> <td>x</td> </tr> <tr> <td rowspan="2">(성장)창업기업</td> <td>개인사업자</td> <td>○</td> <td>○</td> </tr> <tr> <td>법인사업자</td> <td>○</td> <td>x</td> </tr> </tbody> </table> ※ 디자인, 상표 출원 등은 특허출원 성과로 불인정(기타 성과로는 제출 가능)	지원분야	사업자등록 형태	성과 인정 여부		출원인이 지원기업	출원인이 대표자 개인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x	(성장)창업기업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x
지원분야	사업자등록 형태			성과 인정 여부																	
		출원인이 지원기업	출원인이 대표자 개인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x																		
(성장)창업기업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x																		
기타	- PCT 출원서, 해외특허 출원서 등 - 디자인, 상표 출원서 또는 등록증 - 과제 관련 인증에 대한 인증서 - 기타 성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																				

지원과제 비목별 정의 및 정산증빙서류

1. 비목별 정의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임직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에게 지급하는 총인건비 ※ 계상기준 : 세전 총 월급여액 × 인건비 계상율* × 참여기간(월) *계상율= 세전 연(월) 인건비 / 세전 연(월) 급여
	일용임금 (04)	사업을 위하여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의 인건비 ※ 휴일 근무는 집행 불가 ※ 협약기간 중 동일인에 대한 인건비가 5일을 초과하면 집행 불가 ※ 협약기간 중 5명을 초과하여 활용 불가 ※ 사업에 특별히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이력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제출 필수
	기타사항	※ 인건비(보수+일용임금)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는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음 ※ 타부처 지원사업(R&D사업 등 포함), 4대보험 가입 직장 등에서 받는 급여 등을 전부 포함하여 인건비 계상율에 따라 산정한 인건비(국고지원금, 자기부담금 포함)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불인정 ※ 국고보조금으로 집행가능한 인건비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인력, 협약일 이후에 고용한 신규고용인력 ※ 자기부담금으로 집행가능한 인건비는 대표자(현물만 가능),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인력 ※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 ① (대표자)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중 최대 급여) 또는 협약일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급여 ② (기고용인력) 협약일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급여 ③ (신규고용인력) 협약일 이후에 고용시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급여 * 법정최저급여 수준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음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등 2. 운송비 - 운송료, 택배비 3. 전문가 자문료 - 업무수행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기타소득, 사업소득)(1일 1회기준 최대 40만원 내 지급 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동일인에게 2회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4. 지급수수료 - 시험분석비, 검인증비, 회계·세무 기장료, 회계기관 위탁정산수수료, 창업관련 비용(사업자등록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설립비, 금융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p>거래 인증서 발급비), 플랫폼 수수료, 나라장터 수수료, 법무사 활용비, 학회/세미나/전시회 참가비</p> <p>5. 광고선전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서비스)과 창업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제작비, 카달로그 제작비, 제품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계약 체결을 통한 외주 제작)</li> <li>※ 지원과제와 관련된 내용이 결과물에 포함되어야 함</li> </ul> <p>6. 안전관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보호장구 등 구입(추정가격 100만원 이내)</li> </ul>
	공공요금 및 제세 (02)	<p>1. 우편요금</p> <p>2. 전기.가스료 등(임차료 집행 장소에 한하며, 공동비용은 제외)</p>
	임차료 (07)	<p>1. 사무실, 공장, 기자재 임차료(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한함)</p> <p>2. 서버, 소프트웨어 등 이용에 따른 임차료</p> <p>※ 사무실, 공장 등 장소성 임차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일치한 곳만 집행 가능</p>
	재료비 (11)	<p>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li> <li>-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기타 공작물 등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 구입비</li> </ul> <p>2. 시제품 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p> <p>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p> <p>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p> <p>※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협약기간 동안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유무형의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p> <p>※ 양산, 판매 및 영업활동을 위한 재료비 집행 불가</p> <p>※ 특별한 사유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또는 유형자산으로 보여지는 경우 등 전문기관 검토 후 사업비 집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요청할 수 있음</p>
	복리후생비 (12)	<p>참여인력의 월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인건비 계상율* × 참여기간(월)</p> <p>* 세전 연(월) 인건비 / 세전 연(월) 급여</p>
	일반용역비 (14)	<p>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컨설팅, 광고선전비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p> <p>※ 일반용역비의 합은 총 사업비의 40%를 초과할수 없음</p> <p>※ 시제품 설치, 개선, 운반 목적 외의 시공, 공사 등이 포함되는 일반 용역비는 집행 불가</p> <p>※ 외부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창업아이템과 유사한 제품의 제작 경험 보유 필요하고, 외주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이 과업내용과 연관성이 부재할 시 집행 불가</p>
여비 (220)	국내여비 (01)	<p>1. 일반석 기준의 대중교통비(시외버스비, KTX, 고속버스, 국내항공료)</p> <p>2. 숙박비(식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톨비 등은 불가하며, 숙박비는 1인당 8만원 /박 이하)</p> <p>※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내 지역으로 지원</p>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과제 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장소 및 시간 증빙 가능한 비용
	국외여비 (02)	1. 이코노미석 기준의 항공료 2. 숙박비 ※ 숙박비는 기술원 여비규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산정하며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름(일비, 식비 등은 지원 불가)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외부관계자와 진행하는 회의 등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회의비(식비, 다과비 등) ※ 사업추진비는 협약기간내 5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에 따른 음식물, 1인 한도 5만원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출원 비용, 기술이전 비용(특허/실용신안(출원, 등록) 비영리기관 및 산학협력단과의 기술이전만 인정) ※ 지식재산권의 경우, 관리지침 제66조 ③ 및 ④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 최초 협약시작일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 보조사업자의 임직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이 기술이전하려는 지식재산권의 출원인, 발명자, 권리자인 경우에는 기술이전비용 지원 불가 ※ 최초 협약시작일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청구, 등록비 등)과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료 집행 불가 ※ 기술이전 방식이 기술의 양도가 아닌 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등)인 경우, 실시권 존속기간 전체에 대한 비용을 일괄 인정하지 아니하며, 본 사업 협약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에 한하여 인정 ※ 무형자산 비목은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사용 후 정산관련 서류는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 필수

※ 사업비 집행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등은 집행 부담 집행 금액 처리

※ 전문기관의 장과 지원기업의 장이 사업별 비목 적용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르며 지원과제와 관련이 없는 사업비 사용은 부담 집행 금액 처리

※ 모든 사업비는 과제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고 협약기간 내에 구매, 사용 가능한 범위의 내역만 집행 가능

## 2.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3. 예비창업자의 계약업무 세부사항

- **(목적)**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40조제2항에 따라 예비창업자 등의 계약업무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 **(절차 및 내용)** (수정)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되는 2천만원 이상 물품 또는 용역계약의 건과 관련하여 최소 2개 이상의 비교견적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약 후에 관련 사항을 전문기관을 통해 온라인에 공개하여야 함(단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 부정수급 공모 및 가격 부풀리기 예방을 위해 계약서, 비교견적서 등 첨부
  - \*\* 계약 관련 내용은 1개월 주기로 모아서 온라인에 게시

#### 4. 비목별 정산증빙서류

보조비목	보조세목	정산시 제출서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금계산서, 카드내역서 및 지로영수증은 반드시 전자적 증빙 (e나라도움의 불러오기 집행 증빙만 인정, 종이세금계산서 불인정)</li> <li>② 계약건의 경우 계약서 첨부(모든 계약은 보조금시스템의 계약등록)</li> <li>③ 추정가액 2천만원 초과인 계약은 조달시스템의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이 필요하며 조달시스템의 계약서 첨부</li> <li>④ 건당 100만원 이하(VAT제외)의 지출의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관리지침 제40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 금액에서 제외함</li> <li>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 계약체결가능하며, 동 계약의 경우 보조비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인 계약건의 경우 반드시 비교견적서 첨부 ※ 단 지침 제40조제7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li> <li>⑥ 보조금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 첨부 (교부 전 집행 등)</li> </ul>
인건비 (110)	보수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근로계약서(사업기간 중 연봉변동의 경우 갱신 근로계약서), 이력서(신규 인력)</li> <li>② 사업수행현황표(인건비 집행률표)</li> <li>③ 급여명세서(월별)</li> <li>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li> <li>⑤ 통장사본</li> <li>⑥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 받아 지급 시 이체확인서 필요</li> <li>⑦ 사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li> <li>⑧ 사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li> <li>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규채용)</li> <li>⑩ 일용임금의 경우 ①부터 ⑧에 추가하여 일용임금이 사업에 특별히 필요한 사유서, 이력서 및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 가입 필수</li> </ul>
	일용임금 (04)	<p>&lt;현물인 경우 추가 제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 받지 않는 경우 : 전년도 소득증빙 (전년도가 없을 경우 직전 3개년 내 증빙 가능)</li> <li>- 급여 지급 받는 경우 : 실지급 인건비 증빙 일체 (①부터 ⑨)</li> </ul> </li> <li>② 대표이사 제외 직원 인건비 실지급 인건비 증빙 일체</li> <li>③ 인건비 현물납부확인서</li> </ul>

보조비목	보조세목	정산시 제출서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p>1. 인쇄비</p> <p>① 계약에 의한 거래의 경우 계약서 첨부</p> <p>② 견적서</p> <p>③ 계약금액(집행금액) 1,000만원 이상 (VAT제외)경우 비교견적서</p> <p>④ 거래명세서</p> <p>⑤ 검수확인서(수량 및 활용목적)</p> <p>2. 운송비</p> <p>① 계약에 의한 거래의 경우 계약서 첨부</p> <p>② 견적서</p> <p>③ 계약금액(집행금액) 1,000만원 이상 (VAT제외)경우 비교견적서</p> <p>④ 거래명세서</p> <p>⑤ 운송 관련 증빙자료(운송내역, 승·하차 사진포함)</p> <p>3. 전문가 자문료</p> <p>① 자문계획서(자문목적, 사업관련성 등 기재)</p> <p>② 자문결과 보고서(일자별, 자문시간기재)</p> <p>③ 자문수당지(자문비, 주소, 주민번호, 계좌정보 포함)</p> <p>④ 전문가 이력서</p> <p>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p> <p>4. 지급수수료</p> <p>① 계약에 의한 거래의 경우 계약서</p> <p>② 계약금액(집행금액) 1,000만원 이상 (VAT제외)경우 비교견적서(시험 분석비, 검·인증비는 제외)</p> <p>③ 시험분석비, 검·인증비 : 시험분석·검인증 계약서, 견적서(의뢰서), 결과보고서 또는 검인증서</p> <p>④ 회계세무기장료 : 회계·세무 기장료 계약서(법인에 한함)</p> <p>⑤ 회계기관 위탁정산수수료 : 청구서</p> <p>⑥ 창업관련 비용 : 영수증(사업자등록비, 법인설립신청서류(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출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면허세 영수증, 금융거래 인증서 발급 영수증</p> <p>⑦ 플랫폼 수수료 : 견적서, 거래명세서, 사용내역서(해당사이트발급) 및 결과서(활용내역 포함되어야 함)</p> <p>⑧ 나라장터 수수료 : 지로납부영수증 등</p> <p>⑨ 법무사 활용비 : 견적서, 거래명세서, 사용내역서 및 결과서 등</p> <p>⑩ 학회/세미나/전시회 참가비 : 행사안내자료(카달로그 등), 등록 또는 입장 증빙서류, 행사장을 배경으로 한 참석자 증빙사진, 참가보고서</p> <p>5. 광고선전비</p> <p>① 계약에 의한 거래의 경우 계약서</p> <p>② 계약금액(집행금액) 1,000만원 이상 (VAT제외)경우 비교견적서</p> <p>③ 계획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결과서 등</p> <p>6. 안전관리비</p>

보조비목	보조세목	정산시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참가증 또는 거래명세서, 안전보건교육결과보고서</li> <li>② 안전보건을 위한 개인보호구 또는 보호장구는 견적서, 거래명세서 (인터넷 구매의 경우 장바구니 캡처 가능)</li> <li>③ 검수조서(내역, 수량, 실물사진포함)</li> </ul>
	<p>공공요금 및 제세 (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우편요금 : 우편요금영수증</li> <li>② 전기·가스료 등 : 지로영수증(e나라도움의 지로 불러오기 집행 시 제외)</li> </ul>
	<p>임차료 (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무실, 공장 등의 임차계약서 및 임차대상사진 등 ※ 보조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일치 필요</li> <li>② 서버, 소프트웨어 등 : 사용료 계약서, 견적서, 사용내역서</li> <li>③ 서버, 소프트웨어 등 계약금액(집행금액) 1,000만원 이상(VAT제외)인 경우 비교견적서</li> </ul>
	<p>재료비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계약에 의한 거래의 경우 계약서</li> <li>② 견적서</li> <li>③ 계약금액(집행금액) 1,000만원 이상 (VAT제외) 경우 비교견적서</li> <li>④ 거래명세서</li> <li>⑤ 검수조서(재료실물사진, 수량 포함, 협약기간내 검수완료)</li> <li>⑥ 다량의 재료 구매 시 재료비 사용내역서 (입고일, 입고수량, 출고수량 출고일, 잔량을 표시하여야 함)</li> <li>⑦ 수입시 수입신고 서류(통관서류일체, 관세내역이 기재되어야 함)</li> </ul>
	<p>복리후생비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납입 확인서(금액내역 기재)</li> <li>② 인건비 계상율표</li> </ul>
	<p>일반용역비 (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계약서</li> <li>② 견적서</li> <li>③ 계약금액(집행금액) 1,000만원 이상 (VAT제외) 경우 비교견적서</li> <li>④ 거래명세서</li> <li>⑤ 과업지시서, 용역설계서</li> <li>⑥ 용역결과보고서(결과물이 있는 경우 사진포함)</li> </ul>

보조비목	보조세목	정산시 제출서류
여비 (220)	국내여비 (01)	① 출장계획서(출장일, 출장목적 포함) ② 대중교통비(철도일반석기준, 국내항공 이코노미기준) ③ 숙박비 영수증(호텔 Invoice) ④ 출장결과보고서(출장결과물, 출장자의 출장지 사진포함)
	국외여비 (02)	① 출장계획서(출장일, 출장목적 포함) ② 항공료영수증, 탑승권(이코노미기준) ③ 출입국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등) ④ 숙박비 영수증(호텔 Invoice) ⑤ 출장결과보고서(출장결과물, 출장자의 출장지 사진포함)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회의록(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 및 자필서명 등) ※ 외부관계자 참여 명단 필수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1. 특허권 출원 등 ① 특허법인등과의 계약서, 견적서 ② 계약금액(집행금액) 400만원 이상 (VAT제외)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③ 거래명세서 ④ 특허청등의 관납료 영수증 ⑤ 우선 심사 청구시 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 접수증 ⑤ 지식재산권 등 출원서류 (기후부 지원사실 표기 필수,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출원 필수-대표자 포함되면 안됨)  2. 기술이전 비용 ① 기술이전계약서(비영리기관 및 산학협력단만 인정)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나 「발명진흥법」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이 발행한 특허기술 평가금액이 기재된 가치평가보고서 또는 기술평가비용 절감 등을 위해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가 운영하는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www.ipmarket.or.kr)을 활용한 지식재산거래전문관의 중개료 가격산정 및 거래협상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한국발명진흥회 공문 ③ 기술이전 상세내역서 (기간, 내용, 방법 등) ④ 기술이전 활용내역서